

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303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년 8월 12일
제안자 : 조창민 의원

1. 수정이유

-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및 정책점검단의 구성 인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미래발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조정함(안 제3조)
- 나. 정책점검단의 구성 인원을 4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조정함(안 제12조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50명”을 “45명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40명”을 “35명”으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<u>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. ②·④ (생 략)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<u>45명</u> -----. ----- ----- -----.
제12조(정책점검단) ① (생 략) ②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 및 권 역별 부단장, 총괄 간사를 포함하 여 <u>40명</u>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 다. ③ ~ ⑥ (생 략)	제12조(정책점검단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<u>35명</u>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